

최근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주요 내용 안내문

□ [배우자 출산휴가 확대] (2019. 10. 1. 시행)

구 분	내 용
사용기간	유급 10일
청구시기	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
분할사용	1회 분할 사용 허용
적 용	1인 이상 전 사업장
벌 칙	500만원 이하 과태료

□ [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] (2019. 10. 1. 시행)

구분	내 용
단축시간	일 1~5시간(주 5~25시간)
사용기간	육아휴직 최대 1년 + 근로시간 단축 = 2년 * 근로시간 단축은 1년 이상 가능
분할사용	· (육아휴직) 1회 분할사용 허용 · (근로시간 단축) 최소 3개월 단위로 자유롭게 가능(분할사용 횟수 제한 없음)

□ [가족돌봄휴가 신설] (2020.1. 1. 시행)

구분	내 용
사용기간	연간 10일 이내 (무급, 1일 단위로 사용 가능)
사 유	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배우자의 부모, 자녀, 또는 배우자의 부모, 손자녀의 질병, 사고, 자녀의 양육
적 용	1인 이상 전 사업장 (가족돌봄 휴직과 달리 계속 근무 6개월 미만자도 사용가능)
벌 칙	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□ [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설] (2020.1. 1. 시행)

항 목	원 칙	비 고
대 상	모든 근로자(남·녀불문)	사업(장)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 ※ '20년 300인 이상, 공공기관 →'21년 30~299인 →'22년 30인 미만 사업(장)
사 유	가족돌봄, 본인건강, 은퇴준비, 학업	
시 간	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	
기 간	1년	총 단축기간 3년(학업 사유는 1년) 이내에서 1회 연장 가능